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3. 11. 22(금)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회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제1항 제1호에 의거, 제 2011-17차 회의(2011.3.21.) 및 제2012-48차 회의(2012.8.31)에서 의결한 '상위 법령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고시로 하향 입법하거나, 신청 절차서식 등 단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 및 '방송심의 관련 과징금 처분 및 제재조치 명령에 대한 재심신청 건'에 해당됨
- 다만 의결사항 (가)안건은 제2013-40차 회의(2013.11.15)에서 서면의결하기로 정함

② 의결사항

가. 이동통신3사의 이동전화 해지제한 관련 과징금 부과 건(2013-42(서)-153 ~ 155)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한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및 (주)엘지유플러스에 대해 심의한 결과,
 - ▲ 전체 위반율(2%)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으나 일부 해지제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중대"로 보고, 각 사의 부과기준 금액을 4억원으로 적용,
 - ▲ 위반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필수적 가중조항에 의해 기준금액의 30%를 가산,
 - ▲ SKT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SKT 65%, KT 19%, LGU+ 16%)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30%를 추가 가산하여, 에스케이텔레콤(주)에게는 과징금 6억7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주)케이티 및 (주)엘지유플러스에게는 과징금 5억2천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나. (주)문화방송의 <MBC 뉴스데스크> (2개 프로그램) 재심에 관한 건(2013-42(서)-156 ~ 157)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문화방송에 '13.8.21일에 각각 명한 '주의'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조치 처분 관련, (주)문화방송이 신청한 <MBC 뉴스데스크> 2개 프로그램의 방송심의 제재조치에 대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원심처분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위반 내용	위반조항	제재조치 처분명령
MBC-TV '뉴스데스크'	2013.5.24. (금), 19:55-20:40	○ 칸에 나타난 가짜 싸이('한국계 프랑스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앵커) 베껴 만드는데는 선수인 중국, 급기야 가짜 싸이까지 나타났습니다.", "(기자) 이 가짜 싸이는 실제로는 중국계 프랑스인."이라고 전함. (위원회 의견진술 청취 이후인 지난 6월 24일, 자사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이에 대한 정정, 사과 내용을 방송함)	방송심의규정 제14조 제17조 제31조	주의
MBC-TV '뉴스데스크'	'13.6.3. (월), 19:55-20:40	○ 국회의원들이 검직을 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문재인 의원이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고 허위 보도함. ('13.6.4일 문 의원 측 요청에 따라 '문 의원이 세비 이외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정정 보도함)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27조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다. (주)문화방송의 <MBC 뉴스투데이>, 대구문화방송(주)의<대구MBC 뉴스투데이> 재심에 관한 건(2013-42(서)-158 ~ 15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문화방송과 대구문화방송(주)에 '13.8.21일에 각각 명한 '주의' 제재조치 처분 관련, (주)문화방송과 대구문화방송(주)가 신청한 <MBC 뉴스투데이>, <대구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의 방송심의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원심처분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위반 내용	위반조항	제재조치 처분명령
MBC-TV '뉴스투데이'	2013.6.1.(토), 06:00-07:50	○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 범인이 아닌 사람(피해자를 마지막으로 태웠던 택시기사)에 대해, 'CCTV 속 범인의 모습과 일치 한다.'고 보도함.	방송심의규 정 제14조 (객관성)	주의
대구MBC-TV '뉴스투데이'	2013.6.1.(토), 07:15-07:30			주의

라. (재)시민방송의 <백년전쟁> 2개 프로그램 ('두 얼굴의 이승만'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편) 재심에 관한 건(2013-42(서)-160 ~ 161)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재)시민방송에 '13.8.21일에 각각 명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조치 처분 관련, (재)시민방송이 신청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편>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편> 2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심의 제재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원심처분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위반 내용	위반조항	제재조치 처분명령
RTV '백년전쟁 - 두 얼굴의 이승만'	2013.1.21. (월), 22:00-22:55, 1.22(화), 16:00-16:55 등	○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선출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1948년 미국 CIA 문서를 분석하며, 'Part 1.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 것', '에피소드 1. 하와이안 갱스터', '에피소드 2. 악의 탄생', '에피소드 3. 똑바로 뿔아라', '에피소드 4. 상해의 결투', '에피소드 5. 우리는 혁명을 꿈꾼다' 등의 주제로 이승만의 성장기, 미국(하와이 등)에서의 교회 활동, 임시정부 수립 및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 하면서 - 미국 정부의 일부 문서와 편향된 내용의 언론자료 및 인터뷰 내용만을 근거로,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이승만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빙자했다는 내용 등 부도덕한 인물로만 묘사하면서, 젊은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사진을 패러디하여 합성하고, '미친놈', '악질 친일파', '하와이 갱스터', '반역자', 'A급 민족반역자', '하와이 강패', '부도덕한 플레이보이', '돌대가리', '썩은 대가리'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방송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 성), 제14조 (객관성), 제20조(명예 훼손 금지)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위반 내용	위반조항	제재조치 처분명령
RTV '백년전쟁 - 프레이저 보고서(제1부)'	2013.1.26. (월), 23:00-23:45, 1.27(화), 17:00-17:45 등	○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경제성장 배경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1978년 미국 의회에 보고된 '프레이저 보고서'를 분석하며, '프레이저 보고서-누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는가', 'Chapter 1. 케네디의 남자들', 'Chapter 2. 압입한 사무라이들', 'Chapter 3. 수출주도형 국가의 탄생', 'Chapter 4. 채찍과 당근' 등의 주제로 1970년대 한국과 주변국(미국, 일본)의 관계, 박정희 대통령의 대외 활동, 미국의 경제 개입 배경 및 한국 경제 성장의 원인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 미국 입장의 사료와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 내용만을 근거로, 전직 대통령 박정희의 주도적인 정책제시 없이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정책에 의해 한국의 경제발전이 이뤄졌고, 박정희는 경제발전의 성과를 자신의 공로로 조작한 인물로만 묘사하면서, 뱀 사진을 박정희의 얼굴 사진과 나란히 노출하고,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 '뱀 같은 인간(스네이크 박)', '공산주의자', '멍청한 짓'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방송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③ 보고사항

가.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발전기본법」(‘10.3.22.제정)과 같은 법 시행령(‘10.12.27.제정)에서 위임 받은 내용을 고시로 지정하기 위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 내용
 - ▲ (적용범위)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적용(안 제2조)
 - ▲ (주관방송사 지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 지정(안 제4조)
 - ▲ (주관방송사 임무) 주관방송사는 심신 장애인과 외국인 등 특정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 ▲ (재난방송 준칙) 방송사업자는 재난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 등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하여야 함(안 제7조)
 - ▲ (사생활 보호) 방송사업자가 재난 관련 피해자의 신상 공개 및 취재 시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함(안 제8조)